

아동수당 제도 안내

아동수당은 가정에서의 생활 안정에 기여함과 동시에 다음 세대를 짊어질 아동의 건전한 성장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아동을 양육하는 분께 지급되는 것입니다.

청구수속은 출생 및 전입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청구수속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청구한 달의 다음 달 수당부터 지급됩니다. 단, 출생일과 전 주소의 전출예정일 등(이하 '사실발생일'이라고 함)이 월말에 가까운 경우 청구일이 다음달이 되어도 사실발생일 다음날부터 15일 이내라면 청구한 달의 수당부터 지급됩니다. 청구수속이 늦어지면 늦어진 달의 수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십시오.

【지급대상이 되는 아동】

만 0 세부터 고등학생 나이대(만 18 세가 되는 날 이후의 첫 3 월 31 일까지)인 아동

【지급액】

	아동수당금액 (1 인당 월액)	
	제 1 자 · 제 2 자	제 3 자
3 세 미만	15,000 엔	30,000 엔
3 세부터 고등학생 나이대	10,000 엔	

제도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 이후를 참조하십시오.

《 문의 · 신청처 》

☎ 604-8571

교토시 나카교구 테라마치도리 오이케 아가루
가미혼노지마에초 488 번지 교토시청 북쪽 청사 6 층

교토시 어린이가정지원과 분실
TEL:075-222-3777



아동 수당 홈페이지는
여기로

편리합니다!

신청은 우편을 통해 '교토시 어린이가정지원과 분실'로 보내 주세요!

※구청 · 지소 보건복지센터 어린이육성실, 게이호쿠 출장소, 가미카와 출장소에서는 창구에서의 접수 및 일반적인 제도내용에 대한 문의만 대응합니다.



京都市
CITY OF KYOTO



● 대상자(수급자가 되시는 분)

교토시내에 주민등록이 있고 지급대상이 되는 아동을 양육하시는 분(부모나 미성년 후견인 등). 부모가 함께 양육하고 있는 경우 아동의 생계를 유지하는 정도가 높은 분(주로 소득이 높은 분)이 수급자가 됩니다.

- ※ 부모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 부모가 일본 국내에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분을 지정하면 그 분(부모가 지정한 분)에게 지급합니다.
- ※ 부모, 미성년 후견인 또는 부모 지정자 이외라도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분이 지급자가 될 경우가 있습니다.
- ※ 부모가 이혼협의중이거나 별거중인 경우는 아동과 동거하고 있는 분에게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시설 입소 또는 양부모에게 위탁중인 아동의 수당은 시설의 설치자 또는 양부모에게 지급됩니다.
- ※ 공무원인 분은 근무처에서 청구수속을 해야 합니다. 근무처에 문의하십시오.

● 지급대상이 되는 아동

원칙적으로 일본 국내에 거주하는 만 0 세부터 고등학생 나이대(만 18 세가 되는 날 이후의 첫 3 월 31 일)까지의 아동.

- ※ 유학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세한 것은 교토시 어린이 가정지원과 분실로 문의하십시오.

● 지급액

아동의 연령	아동수당 금액(1 인당 월액)	
	제 1 자 · 제 2 자	제 3 자
만 3 세 미만	15,000 엔	30,000 엔
만 3 세 이상 고등학교 연대	10,000 엔	

【제 3 자 이후의 가산에 대하여】

수당 지급대상은 고등학생 나이대까지의 아동인데 자녀의 인원수를 셀 경우는 수급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있는 22 세 연도말(22 세 도달후 첫 3 월 31 일까지)까지의 자녀를 세어 제 3 자 이후의 가산은 고등학생 나이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제 3 자 이후의 가산을 받으시는 분으로 18 세 연도말부터 22 세 연도말까지의 자녀를 감호에 상당하는 보살핌을 하고 그 생계비를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별도로 ‘감호상당 · 생활비부담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지급액 예】 (3 명의 아동을 양육하고 그 연령이 각각 다음과 같은 경우)

- 만 19 세, 만 16 세, 만 11 세
 만 19 세는 대학생 나이대로 제 1 자로서 카운트한다
 만 16 세는 고등학생으로 10,000 엔 【제 2 자로서 카운트】
 만 11 세는 초등학교 수료 전의 제 3 자가 되어 30,000 엔 【월액 40,000 엔】
- 만 23 세, 만 17 세, 만 14 세
 만 23 세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만 17 세는 고등학생으로 10,000 엔 (제 1 자로서 카운트)
 만 14 세는 중학생으로 제 2 자가 되어 10,000 엔 【월액 20,000 엔】

- ※ 18 세 연도말 이후 22 세 연도말까지의 자녀에 대해 다자녀 가산 카운트 대상으로 하는 요건에 대해서는 해당 자녀에 관한 ‘경제적 부담’이 수급자에게 있는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 지급시기

청구수속시에 지정된 청구자 명의의 계좌에 원칙적으로 연 6 회(짝수 달)에 각각 전월까지의 수당(지급대상월)이 계좌이체됩니다.

- ※ 지급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교토시 정보관 <https://www.city.kyoto.lg.jp/hagukumi/page/0000182951.html>)

<지급 예시>

지급월	8 월	10 월	12 월	2 월	4 월	6 월
지급대상월	6~7 월분	8~9 월분	10~11 월분	12~1 월분	2~3 월분	4~5 월분

- ※ 지급일이 금융기관 휴업일인 경우는 그 전 영업일이 됩니다.
- ※ 교토시에서 아동수당을 수급받는 분의 수급자격이 전출 등으로 인한 수급자격 소멸일 경우는 다른 달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예) 6 월 지급일에는 4~5 월분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 **수당지급을 받을 때**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청구수속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수당부터 지급합니다. 단, 사실발생일 다음날부터 15 일 이내에 청구수속을 하면 사실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수당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사유	구비서류
아동이 태어났을 때	* 인정청구서 (※1) * 청구자명의 보통예금(저금)통장 또는 현금카드의 사본 * 청구자의 보험 자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부 공제조합 가입자에 한함) (※2) * 청구자의 개인번호확인서류 * 청구자의 신원확인서류
수급자가 다른 시정촌에서 전입했을 때	
아동을 양육했을 때(수급자를 변경할 때)	
수급자가 공무원을 그만두었을 때	

- ※ 1 세대상황에 따라 상기 이외에도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정청구서에 청구자나 배우자의 마이넘버를 기입해야 합니다.
- ※ 2 마이넘버를 통한 정보 연계로 따라, 청구자 본인의 보험 자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은 원칙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일부 공제조합 가입자는 제외). 자세한 사항은 인정청구서 뒷면을 참조하십시오. 청구서류는 교토시 어린이가정지원과 분실, 각 구청, 지소, 게호쿠 출장소, 가미카와 출장소에서 배부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 공무원인 분은 근무처에서 청구수속을 하십시오. 고용형태에 따라서는 교토시에 청구수속을 해야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무처에 확인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

- * 15 일째가 폐청일(토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개청일이 제출기한일이 됩니다.
- * 대형연휴나 연말연시에는 창구에서 청구수속할 수 있는 기간이 평소보다 줄어듭니다.
- * 청구수속이 늦어지면 늦어진 달의 수당을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

● **현황신청서 (매년 6 월)**

2022 년도분부터 아동의 양육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면 하기에 해당하는 분 외에는 현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황신청서 제출이 필요한 분】

- DV(배우자의 폭력 등)로 인해 주민표의 주소지가 교토시와 다른 분
- 호적이나 주민표가 없는 지급요건 아동을 양육하고 계신 분
- 이혼 협의 중으로 배우자와 별거 중이신 분
- 기타, 본 시에서 제출 안내를 받으신 분
- ※ 현황신청서는 매년 6 월 1 일의 상황을 파악하고, 아동수당 등을 계속해서 받기 위한 요건(아동의 감독 및 보호, 생계 동일 관계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6 월분 이후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십시오.
- ※ 공적 장부 등에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 현황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 **시효**

수당을 수급받을 권리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2년을 경과했을 때 시효가 되어 소멸됩니다.
 (예) 현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10 월 10 일의 정기지급을 받지 못했을 때 지급일(10 월 10 일) 다음날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가 됩니다.

● **수당지급이 끝날 때**

수당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는 수속이 필요합니다. 수당지급은 지급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로 종료됩니다.

수당의 지급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수급받았을 경우에는 수급된 금액을 반납해야 하므로 수속이 필요한 분은 신속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유	구비서류
아동이 만 18 세 도달일 이후 첫 3 월 31 일을 맞이했을 때	수속은 필요없습니다.
아동을 양육하지 않게 됐을 때(이혼, 구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급사유소멸신청서 ※ 동 양식은 교토시 어린이가정지원과 분실, 각 구청, 지소, 게호쿠 출장소, 가미카와 출장소에서 배부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1)	
수급자가 교토시외로 전출했을 때 (※2)	
수급자가 공무원이 되었을 때 (※3)	

※1 지불해야 할 수당에 미지불이 있을 때는 아동에게 미지불분 수당을 지급하므로 미지불 청구서를 제출하십시오. 새로이 수급자가 되는 양육자는 인정청구수속이 필요합니다.

※2 교토시외로 전출할 경우 계속하여 수당 수급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전출예정일 다음날부터 15 일 이내에 전출처 시정촌에서 수당 청구수속을 하십시오.

※3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근무처에서의 지급으로 바뀔 경우는 근무처에 청구함과 동시에 교토시에 수급사유소멸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인사이드 통지서 등이 필요합니다).

● 기타 수속이 필요한 경우

다음 사유에 해당할 때는 신속히 신청을 하십시오.

주요 사유	수속양식	
지급대상이 되는 아동이 늘었을 때(수당액이 증가할 때)	금액개정인정청구서	
지급대상이 되는 아동이 줄었을 때(수당액이 줄 때)	금액개정신청서	
수급자가 공무원이 되었을 때	분실, 구청 등에	수급사유소멸신청서
	근무처에	인정청구서
수급자가 공무원을 그만두었을 때	분실, 구청 등에	인정청구서
	근무처에	수급사유소멸신청서
수급자의 주소가 바뀌었을 때(교토 시내에서의 주소변경)	변경신청서	
양육하고 있는 아동만 주소가 바뀌었을 때	계속하여 아동을 양육하고 있을 때	변경신청서, 신고서
	아동을 양육하지 않게 되었을 때	소멸신청서
수급자 또는 양육하는 아동의 이름이 바뀌었을 때	변경신청서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할 때	변경신청서	
수급자, 배우자, 시외거주 아동의 마이넘버가 바뀌었을 때	개인번호변경등 제의서	

※ 수속에 따라 인감(샤치하타도장 불가), 청구자 명의의 보통예금(저금) 통장 또는 현금카드, 청구자 본인의 보험 자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연금가입증명서, 생계관계 및 기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인정청구서, 별거감호 신고서, 개인번호변경등 신고서, 감호상당·생활비부담 확인서는 마이넘버(개인번호) 기입과 개인번호 확인서류와 신원확인서류를 제시(우송할 경우는 사본을 동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교토시 어린이가정지원과 분실로 문의하십시오.

※ 수속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이포탈에 의한 전자신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6월 이후에는 ‘배우자의 주소 또는 이름이 바뀌었을 때’, ‘함께 아동을 양육하는 배우자가 생겼을 때 또는 아동을 양육하던 배우자가 없어졌을 때’, ‘수급자가 가입한 연금이 바뀌었을 때(수급자가 공무원이 되었을 때를 포함)’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기부신청》

수급자는 차세대를 짊어질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미리 본시에 신고함으로써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부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교토시 어린이가정지원과 분실로 문의하십시오.